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409 |
|----------|-----|

2024. 10. 1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사업내용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라. 출연예산 : 65,834천원

마. 산출기초

2023년도 보통세 548,612,566천원의 1만분의 1.2

4. 참고 사항

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이하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중략)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중략)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주현)

가. 출연 취지 및 배경

- 이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강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¹⁾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업무 >

- 사업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²⁾
 - 지방세의 연구·홍보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³⁾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3항4)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위 내용을 정리하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⁵⁾ 그 출연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됨.

나. 검토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한 재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이므로, 우선 지방세발전기금이 적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적립 근거 및 적립 비율은 다음과 같음.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적립 비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

- 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2025년도 강남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서울특별시 강남구, 2023. 12. 기준)

[2023년도 결산]

(단위: 천원)

| | | |
|--------------|-------------|-----------------------|
| 보통세 | 542,350,193 | Ⓐ 548,612,565 |
| 재산세 | 441,510,917 | |
| 등록면허세 | 95,644,632 | |
| 지방소비세 | 5,194,643 | |
| 지난연도수입 | 6,262,372 | |
| 법정 비율 | Ⓑ 1만분의 1.2 | Ⓐ × Ⓑ = 65,834 |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

- 강남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매년 적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이행에 사용하였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근 5개년 세입 현황 >

(단위:백만원)

| 년 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금 액 | 1,351,659 | 1,681,402 | 1,665,507 | 1,652,678 | 1,611,384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근 5개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 >

(단위:천원)

| 년 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금 액 | 53,541 | 56,836 | 66,668 | 72,551 | 65,834 |

○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세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법령 제공시스템 운영 등이며, 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관련된 실적을 정리한 현황은 [붙임 1]과 같음.

[붙임 1]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현황 및 강남구 지원 실적

다. 종합 의견

○ 일률적인 출연 기준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규모를 정하는 법정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되어 왔음.

< 최근 6개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 변동 현황 >

(앞의 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 산정기준 중 ㉔를 말함)

| 회계연도 | 2020 | 2021 | 2022 ~ 2025 |
|------|----------|----------|-------------|
| 법정비율 | 1만분의 1.5 | 1만분의 1.3 | 1만분의 1.2 |

- 강남구의 결산 기준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강남구의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6,677천원 감소하였음. 2025년에 적용된 법정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규모가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세입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고 보임.

- 통상적으로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여러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의 산정 방식은 법으로 일률 적용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출연 목적

-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준에 따라 출연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⁶⁾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이 규정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영사항을 확인할 근거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논의 끝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년부터 비로소 경영공시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5년도 출연금이 잘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859호]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573호]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1. 1만분의 1.2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6 - 01 출연금 (p.111)

-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붙임 1]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현황 및 강남구 지원 실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관리과, 2024. 9. 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내역 및 사업 현황

1 | 출연 근거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2 | 출연금 산정 내역

- 2023년도 보통세 548,612,566천원의 1만분의 1.2 → 65,834천원
 ※ 2023년 결산기준 보통세 548,613백만원(재산세 441,511백만원 / 등록면허세 95,645백만원 / 지방소비세 5,195백만원 / 지난연도 6,262백만원)
- 강남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최근 5개년) (단위:천원)

| 년 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금 액 | 53,541 | 56,836 | 66,668 | 72,551 | 65,834 |

3 | 지방세 교육

- 지방세 교육 : 총 344명 교육 ('18년 ~ '24년 9월) (단위 : 명)

| 구 분 | 합 계 | 2014~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9 | |
|-------|------|-----------|--------|-------|-------|-------|-------|-------|--------|-------|
| 교육 횟수 | 458 | 89건 | 39 | 69 | 33 | 55 | 56 | 73 | 44 | |
| 교육 인원 | 전 국 | 55,036 | 10,520 | 4,312 | 4,400 | 2,360 | 9,300 | 8,260 | 9,324 | 6,560 |
| | 서울시 | 7,443 | 1,170 | 495 | 584 | 366 | 1,417 | 1,412 | 1,299 | 690 |
| | 강남구* | 344 | | 21 | 18 | 26 | 68 | 107 | 69 | 35 |

* 2017년 이전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교육인원 집계

4 지방세 징송사무 지원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국 | 건수 2,374 | 43 | 120 | 279 | 276 | 256 | 258 | 992 | 150 |
| 서울 | 건수 197 | 10 | 16 | 23 | 36 | 37 | 29 | 26 | 20 |
| 강남구 | 건수 6 | 1 | - | - | 1 | 1 | - | 2 | 1 |
| | 세액 35,314 | 9,912 | - | - | 223 | 2,264 | - | 22,887 | 28 |

5 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 운영

□ 지방세 법령정보DB구축 등 주요법령 정보 제공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시스템 운영
 - * 대법원·조세심판원 등 법령정보 발생기관 자료 신속수집·제공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커뮤니티 제공
- 지방세 전문 소식지 「지방세 알렘e」 발간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 구 분 | 합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 | 대법원 판례 | 법제처 유권해석 | 조세심판원 결정례 | 감사원심사 결정례 | 행안부 유권해석 |
|---------|--------|--------------|-----------|-------------|--------------|--------------|-------------|
| 정보제공(건) | 63,603 | 202 | 33,273 | 1,053 | 22,811 | 1,884 | 4,380 |

6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

□ 서울 강남구 지원 실적(2024년)

- 마곡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 면제 : 115동 (10,400호) ※ 예산절감: 8,855천원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산정 : 247동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409 |
|----------|-----|

제출년월일 : 2024. 9. 30.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세무관리과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

2. 출연금 내역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사업내용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라. 출연예산 : 65,834천원

마. 산출기초

2023년도 보통세 548,612,566천원의 1만분의 1.2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이하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중략)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중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